통계법 제33조(비밀의 보호)에 의거 본 조사에서 개인의 비밀에 속하는 사항은 엄격히 보호됩니다.

ID				
----	--	--	--	--

학교폭력예방 및 회복조정에 대한 교사 의견 조사

안녕하십니까?

부산여성가족개발원은 아동·청소년 권익증진, 양성평등 실현과 건강한 가정 구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 연구기관입니다. 본 조사는 부산지역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회복조정사업 관련 인식을 조사하기 위한 조사입니다. 현재 상황에서 성심껏 응답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본 조사결과는 통계적 목적으로만 이용됩니다.

2020년 5월

▷ 연구기관 :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가족정책연구부 이진숙 연구위원 (051-330-3423)

▷ 조사기관 : 리서치한국

설문 작성 시 주의사항: 문항을 잘 읽고 제시되는 보기 중 자신의 생각과 가장 비슷한 번호에 "✓" 해주시거나 의견을 적어주십시오.

다음은 귀하의 개인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.

SQ1. 성별	① 여자 ② 남자
SQ2. 연령	① 20~29세 ② 30~39세 ③ 40~49세 ④ 50세 이상
SQ3. 근무지	① 중구 ② 서구 ③ 동구 ④ 영도구 ⑤ 부산진구 ⑥ 동래구 ⑦ 남구 ⑧ 북구 ⑨ 해운대구 ⑩ 사하구 ⑪ 금정구 ⑫ 강서구 ⑬ 연제구 ⑭ 수영구 ⑮ 사상구 ⑯ 기장군
SQ4. 학교급	① 초등학교 ② 중학교 ③ 고등학교
SQ5. 학교 유형	① 남녀공학 ② 여학교 ③ 남학교
SQ6. 설립 형태	① 국·공립 ② 사립
SQ7. 교직경력	① 5년 미만 ② 6년~10년 미만 ③ 10년~15년 미만 ④ 15년 ~ 20년 미만 ⑤ 20년 이상
SQ8. 학교폭력 업무 경력	① 1년 미만 ② 2~3년 미만 ③ 3~5년 미만 ④ 5~10년 미만 ⑤ 10년 이상

I. 학교폭력 관련 인식

- 1. 귀하는 부산의 학교폭력이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 - ① 전혀 심각하지 않다 ② 별로 심각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심각하다 ⑤ 매우 심각하다
- 2. (1번 문항 ④, ⑤번 응답자만) 귀하는 부산의 학교폭력 중 어떤 것이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 - ① 말로 하는 협박이나 욕설(명예훼손, 모욕, 공갈, 협박 등) ② 집단따돌림 ③ 괴롭힘(심부름 등)
 - ④ 돈 또는 물건을 빼앗음(약취) ⑤ 손, 발 또는 도구로 맞거나 특정한 장소 안에 갇힘(상해, 폭행, 감금 등)
 - ⑥ 성적인 부끄러움을 갖게 하는 말, 행동 또는 강제로 몸을 만지는 행위(성폭력)
 - ⑦ 인터넷, 휴대폰을 활용한 욕설, 비방 및 촬영피해(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)
- 3. 귀하는 부산의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교육이나 지원체계의 수준이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
문항	매우 미 흡 함	미흡함	보통	우수함	매우 <u>우수</u> 함
1) 학교폭력예방교육의 수준					
2) 학교폭력예방 지원체계의 수준					

4. 학교폭력 예방 및 대처를 위하여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 우선순위대로 3가지를 골라 번호를 써 주십시오.

1순위	2순위	3순위

- ① 학생 처벌 등 교사의 지도권 강화 ② 상담사 등 예방과 치유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
- ③ 학생들 간의 관계회복,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정을 위한 프로그램 ④ 학교폭력예방교육 확대
- ⑤ 가정, 경찰 등의 관련기관의 연계 지도 ⑥ 문화 · 예술 · 체육 등의 청소년활동 지원
- ⑦ 입시와 경쟁위주의 교육 정책 전환
- ⑧ 소통과 배려의 학교문화 정착

)

9) 기타(

Ⅱ.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 전반에 대한 인식

※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는 부산시에서 설립하고 신라대학교에서 위탁운영하는 기관으로써, 부 산의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청소년의 관계 회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 니다. 부산시청 소년종합지원센터(사상구 덕포동 소재)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.

현재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는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청소 년들의 용서와 화해를 돕기 위한 '대화모임(회복조정)'을 운영하고 있습니다. '피해자 기해자 대화모임(회복조정)'은 갈등을 겪고 있는 당사자들이 직접 만나 사건으로 인해 가졌던 느낌과 경 험을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이야기도 들음으로써 서로 이해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.

대화의 진행은 전문적으로 훈련된 제 3자(조정자)가 맡기 때문에 피해자, 가해자가 단 둘이 있게 되거나 말다툼이 일어날 걱정은 없습니다. 필요하면 보호자도 동석하게 됩니다.

1. 귀하는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에 대하여 알고 계십니까 ① 알고 있다(☞ 1-1번) ② 모른다(☞ 2번					
1-1. 귀하는 어떤 경로로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를 알7 ①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의 홍보물 ② 학교(동료 ④ 타 기관(연수 등) ⑤ 인터넷, sns 홍보물 등의 게 ⑦ 기타()	교사) (③ 교육청(교육지원	정)	
1-2. 귀하는 학교폭력예방과 회복조정을 위하여 학교폭력 [©] 적이 있습니까?	예방회복조	조정센터의	서비스를	이용하신]
① 있다(☞ 1-2-1번) ② 없다(☞	₹ 1-2-2°	번)			
1-2-1.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셨다 ① 학교폭력 갈등해결을 위한 회복조정(당사자 간 회복 ② 또래조정사업(또래조정자 양성 등) ③ 유형 ④ 학교폭력 관련 각종 상담(심리검사, 컨설팅, 법률상담	루조정 프 명별 맞춤 [†]	로그램) 형 교육(학			유 등))
1-2-2.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의 서비스를 이용하지 ① 서비스가 필요하지 않음 ② 서비스를 이용하는 빙 ④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음 ⑤ 학교폭력 ⑥ 법률 상,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반드시 이행 ⑦ 기타()	법을 모른 문제가 [를 ③ 학생 더 커질 것	생이나 학년 첫 같음		하지 않음
1-3.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가 개소한(2015년 4월 개소 볼 때 어떻게 평가하십니까? ① 매우 미흡하다 ② 미흡한 편이다 ③ 보통여					
1-4. 다음은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에 대한 전반적 평 √표 해주십시오.	가입니다.	. 가장 적	합하다고	생각하시-	는 번호에
문항	전혀 그렇지 않다	그렇지 않다	보통이 다	그렇다	매우 그렇다
1)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는 학생에게 잘 알려져 있다.	ω 1				
2)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는 학부모에게 잘 알려져 있다.					

3)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는 교사에게 잘 알려져 있다. 4)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는 학교폭력 예방과 조정을 위해

5)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는 학교폭력 예방과 회복조정을

기여하고 있다.

위해 필요하다.

2. 귀하는 학교폭력 사안처리 과정에서 학교폭력 관련자(피, 가해학생 및 학부모)들에게 대화모임(학교폭력 당사자 간 회복조정)을 소개하거나 추천하십니까?
① 소개하거나 추천하지 않음(☞ 2-1번) ② 소개하거나 추천하고 있음(☞ 2-2번)
2-1. (문항 2번의 ① 응답자만) 귀하가 학교폭력 관련자(피, 가해학생 및 학부모)들에게 대화모임을 소개, 추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
① 문제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음 ② 학생이나 학부모가 원하지 않을 것 같음 ③ 피해학생이 가해학생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할 것 같음 ④ 학교폭력 문제가 오히려 더 커질 것 같음 ⑤ 기타()
2-2. (문항 2번의 ② 응답자만) 귀하가 학교폭력 관련자(피, 가해학생 및 학부모)들에게 대화모임을 소개,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① 학생과 학부모의 기분과 감정을 표현하게 하고 싶어서
②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를 회복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③ 가해학생이 피해학생에게 사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
④ 가해학생이 학교에서 처벌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⑤ 학교가 아닌 제3자인 전문가라면 객관적인 회복조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⑥ 기타()
3. 귀하는 향후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의 '대화모임(학교폭력 당사자 간 회복조정)'에 학교폭력 관련자들을 참여시킬 의향이 있습니까?
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
4. 2020년 3월,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된 상황에서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의 '대화모임(회복조정) 서비스'가 효과적으로 제공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십니까?
* 학교폭력예방법 주요개정 내용(일부내용만 제시) 1) 경미한 학교폭력은 학교장 자체적으로 종결 가능(경중은 피해학생과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요구의사의 서면확인, 전담기구의 서면확인 및 심의를 통하여 판단) 2) 사안의 심의와 조치는 단위 학교의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아닌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 위원회에서 수행
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
5. (4번 문항 ①, ②, ③ 응답자만) 법률 개정으로 인하여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의 '대화모임(회복조정) 서비스'가 효과적으로 제공되기 어렵다고 생각하신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? ① 법률상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회복 및 조정 노력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② 법률 개정으로 단위학교의 학교폭력 회복, 조정에 대한 역할이 감소했기 때문에 ③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이 관계회복 및 조정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④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관계회복 및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⑤ 기타(

6. 향후 학교폭력의 회복과 조정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의 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① 전혀 필요하지 않다 ② 필요하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필요하다 ⑤ 매우 필요하다
7.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는 대화모임(회복조정)이 외에 '유형별 맞춤교육, 또래조정사업'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. 귀하는 향후 이러한 프로그램에 학생들을 참여시킬 의향이 있습니까?
*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의 '유형별 맞춤교육'은 초, 중, 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에서 긍정적 관계를 형성하도록 예방교육을 실시하거나, 갈등을 겪고 있는 초, 중, 고등학교 학급 공동체를 대상으로 교육이 나 상담을 실시함으로써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한 교육·상담사업입니다. 또래조정사업은 또래조정을 희망하는 초, 중,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또래갈등을 스스로 해결하도록 돕 는 또래조정자 양성 교육프로그램입니다.
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
7-1. (문항 7번의 ①, ②, ③ 응답자만) 귀하가 '유형별 맞춤교육, 또래조정자 양성'에 학생들을 참여시키지 않으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①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함 ② 학교와 학생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음 ③ 학생들이 원하지 않을 것 같음 ④ 학교구성원(교장, 교감, 동료교사 등)을 설득하기 어려움 ⑤ 기타()
7-2. (문항 7번의 ④, ⑤ 응답자만) 귀하가 '유형별 맞춤교육, 또래조정자 양성'에 학생들을 참여시키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 ①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형성에 필요할 것 같음 ② 안전하고 평화로운 학교공동체 형성에 도움이 될 것 같음 ③ 학생들이 원할 것 같음 ④ 학교구성원(교장, 교감, 동료교사 등)이 필요로 함 ⑤ 기타()
8.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? ① 법률 상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 관계회복 및 조정 노력을 의무화해야 함 ② 학교폭력 예방 및 회복조정을 위한 전문기관이 더욱 많아져야 함 ③ 학생, 학부모, 학교, 교육청 등이 관계의 회복, 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함 ④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⑤ 기타()
9. 현재 학교폭력예방회복조정센터는 부산시에서 설립하고 민간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. 효과적인 학교 폭력예방 및 회복, 조정을 위해서 회복조정센터를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?
♣ 본 설문조사에 응답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♣